

대학 산업자문료 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지선구

국립금오공과대학교 IT융합학과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n University's Industrial Consultations

Seonkoo CHEE

Department of IT Convergenc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Abstract Industrial consultation is a kind of personal service for companies.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sets up a consultation contract in which a professor performs the consultation as the person in charge. Recently, there is an issue regarding taxation of the consulting fee paid to the professor; in short, there is no standardized practice for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nsultation and present an acceptable taxation rule based on related laws. First, it is not appropriate to regard consulting fees as wage income,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d the professor. Considering that the base consulting fee amount is the same as the invention compensation, according to accounting practices, and that an employee invention is apt to be derived in the consultat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sulting fee should be regarded as wage income similar to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As treating the consulting fee as wage income could end up reducing industrial consultations, the government should amend the income tax law to include industrial consultation as a type of other income.

Keywords : Consulting Fee, Employee Invention, Income Tax, Industrial Consultation, Professor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지원되었음(2018-104-141).

*Corresponding Author : Seonkoo CHEE(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email: lingerchee@kumoh.ac.kr

Received March 23,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April 29,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강조되면서 대학 교원의 산업자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과 기여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도입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서 산학협력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이 좀 더 산업자문에 힘을 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산업자문이란 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단체의 자문(諮問) 요청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자문은 대학 교원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활동 중 하나로, 업무 특성상 기술적 창작 활동을 포함하나 경영 자문의 경우에는 기술적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기업의 재무나 경영전략,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을 컨설팅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교원의 산업자문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자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인적·제도적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의 전담 지원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산학협력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3], 이는 산업자문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세무신고 등 교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상근으로라도 세무사를 고용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등 규모가 있는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대부분 학교 주변의 세무사무소와 계약을 맺어 세무 사건이 발생할 때만 의뢰를 하는 실정이다. 산학협력단의 세무 담당자는 관행에 따라 일반적인 세무 업무만을 처리할 뿐, 세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세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원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산업자문료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이다. 201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되며, 특허나 노하우 기술이전으로부터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취급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산업자문료에 대해서는 딱히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어 대학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업자문료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공문으로 국세청에 민원질의를 넣을 정도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8년, 간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등 소위 거점 국립대학들은 교원의 산업자문료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반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군산대, 한밭대 등 중소규모 국립대학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성균관대, 계명대 등 사립대학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대해 대학마다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며, 명확한 소득세 과세 기준 제시로 대학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단이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판정되면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자문료에 대한 소득세 과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의 산업자문료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타당한 산업자문 과세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산업자문 과세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산업자문 과세 관련 법령과 사례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산업자문 관련 핵심 쟁점을 하나씩 검토한 후 제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2. 선행연구

연구수당, 직무발명 보상금 등, 교원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각종 금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대부분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의 심결례에 기초해 사안별로 과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나동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문제를 검토한 후, 특허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면 교원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특허등록 전이라도 기술이전 되었다면 특허권 이전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4]. 또한, 특허권이 수반되지 않은 노하우 기술이전도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이전에 해당하느냐, 다르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상도 등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용역에 대한 면세 조항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5].

한편, 이광숙은 산학협력단의 과세 문제를 학교기업 사례에 집중해 검토한 후, 학교기업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특별조직으로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교육 활성화를 위해 면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박정우는 학교법인의 세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사립대학을 조세징수기관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삼아 규정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산업자문료에 대한 과세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김종태 등[8]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종태 등은 사립대학 교원의 소득세 신고 업무를 검토하면서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단체로부터 용역대를 받아 간접비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김종태 등이 근거로 든 관련 규정은 2016년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219(2000.02.11.)」이었다.

김도경도 김종태 등과 유사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해 총액에서 연구 간접경비를 공제한 후 교수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9]. 더 나아가 김도경은 대학 교원 개인이 기업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하되, 비상업적으로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에서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동일한 취지인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종합해 보면 산업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산업자문료 과세 관련 규정

3.1 교원의 산업자문 절차

통상 산업자문은 기업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교원이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조직(TLO)에 계약을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산학협력단은 산업자문에 대한 조건을 검토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양당사자는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과 기업이며,

교원은 계약서 상 자문 활동을 주관하는 책임자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원은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이 요청하는 기술·경영자문을 실시한다. 통상 기술자문의 경우 자문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완료 시점에 특허법상 발명, 실용신안법상 고안 등이 도출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계약상 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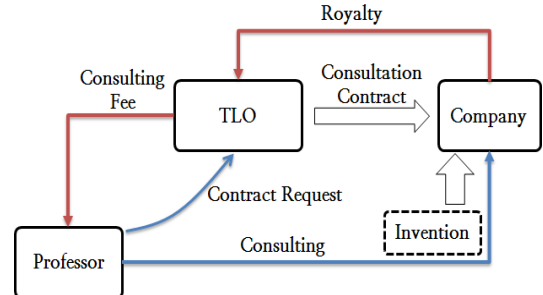


Fig. 1. Process of the industrial consultation in the university

한편, 기업은 산업자문에 대한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기술료(royalty)를 지급한다. 동 기술료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수입(收入)된다. 한편, 산학협력단은 산업자문을 수행한 교원에게 산업자문료를 지급한다. 통상 산업자문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지속되는바, 산업자문료는 정기·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교원의 산업자문 과정을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3.2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

대학 교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귀속되나,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위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때에는 동법동조 제2항에 따라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한다. 여기서, 직무발명이라 함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10]. 한편,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창작 등 세 가지로 제한된다[10].

교원의 직무발명을 승계 받은 산학협력단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

당한 보상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교원과 협의 하에 적절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불리한 규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교원과 협의를 하는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10].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산학협력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산학협력단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에 근거한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 제31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기초해 산학협력을 하거나 기술지주회사 등에 기술출자 등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당 교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3.3 교원 대상 소득세 과세

교원은 대학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봉급, 상여, 수당 등을 수령하면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때, 고용계약은 통상 근로계약을 말하지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준하는 경우와 공무원과 같이 공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업원이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바, 여기서 비독립적이라 함은 타인의 계산과 위험 아래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그와 같은 활동을 할 때 타인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1].

한편,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계속적·지속적으로 수행해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동 서비스 활동이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으나, 교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비상업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적용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의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한다[11].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 대학 교원과 관련된 기타 소득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법 동조 동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강연료 등을 받는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및 퇴

직한 교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다.

소득세법상 대학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의2에 따라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며, 퇴직한 후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종전에는 재직 구분 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201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한편, 우리 세법에서 산업자문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산업자문을 전문지식에 기초한 인적용역 제공의 한 형태로 보고 일반 과세 이론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에 산업자문과 유사한 경영자문 용역의 소득구분이 포함되바,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집행기준 21-0-9」에 따르면 경영자문용역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근로자 지위에서 자문을 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을 자문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한다. 동일한 인적용역이라도 고용계약의 유무, 지속성 및 우발성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는 것이 소득세법 및 국세청 과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교원 대상 소득세 과세 판단 절차를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Fig. 2에서는 고용계약의 유무 및 용역제공의 지속성·우발성만을 조건으로 포함하였으나, 대가의 크기, 용역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적 의도가 있는지 등도 고려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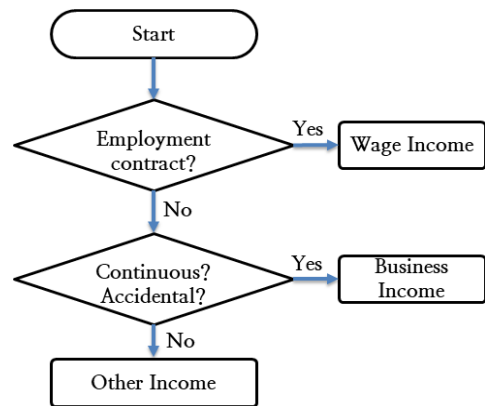


Fig. 2. Income tax determination process

4. 산업자문료 과세 관련 쟁점 검토

4.1 산업자문에서의 교원의 지위

산업자문료에 대한 과세 근거를 검토하기에 앞서 산학협력단과 교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적 영역의 대가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원에게 금원이 지급되는바, 산학협력단과의 관계에 있어 고용계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산업자문료가 근로소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원은 총장이 사용자인 대학의 종업원으로, 산학협력단과는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11]. 즉, 교원은 대학과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할 뿐, 별도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과는 단지 산학협력에 있어 협력 관계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서도 타당성을 얻는다. 소득세법은 산학협력단과 교원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항목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직무발명 보상금 수수에 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2].

한편, 고용관계는 계약의 존부 등 그 외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지시·감독 여부, 종업원의 종속성 등에 기초해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대학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의 지시에 따라 교원이 산업자문을 하였다면 간접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넓은 의미에서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1]. 즉, 교원은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산업자문 계약의 주체인 산학협력단장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산학협력단은 넓은 범위에서 대학 조직이므로 산업자문이 대학과 교원간의 근로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엄연히 대학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간접적 근로계약 관계 이론은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4.2 산업자문료의 성격

산학협력단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지급 근거를 살펴보면 소득세 과세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다.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법 상 지출관련 규정에서 제32조제1항2호의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으며, 보기에 따라 동조동항 제4호의 「산학협력단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 전자는 통상 산업자문 계약에 자문료액과 지급 시기 등이 포함되는바, 자문료가 그에 따라 지급된다

면 시제품 제작비나 전문가 활용비등과 같이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산업자문료를 특허 등의 양도에 기한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산학협력단의 재정에 기여한 보상금조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산업자문료를 후자의 보상금으로 본다면 재론의 여지 없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및 동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학협력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업자문료를 전자의 경비로 본다면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는바, Fig. 2와 같은 판단 프로세스를 거쳐 소득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단 관리부처인 교육부가 발행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에 따르면 산업자문에 따른 기술수입은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하고,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직무 발명보상금과 동일하게 산학협력보상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3 산업자문과 직무발명의 관계

산업자문료를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한 성격의 금원으로 본다면 산업자문과 직무발명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산업자문과 직무발명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 기술자문의 경우 교원이 보유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이용해 기업이 겪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소위 「발명」은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자문을 통해 과제가 해결되었다면 직무발명이 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영자문의 경우도 컨설팅과정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형상화될 수 있으므로 소위 BM발명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산업자문은 교원이 기업의 기술적 요청에 기해 다양한 발명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바, 산업자문료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산업자문료의 과세 관행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종전 소득세법에서 산업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해 기타소득으로 보고 비과세했었다[2].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던 산업자문료를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4 산업자문과 연구용역의 차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의 일종으로 보고 산업자문료를 연구수당으로 취급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3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연구용역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적 결과를 안출해 제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산업자문과 일견 유사한 측면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3항은 연구용역에 따른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려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상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산업자문료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자문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한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이 관리하여 지급하는 연구수당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산업자문은 산업체등의 요청에 따라 경영이나 기술의 개량 등에 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인바, 교원과 고용관계가 있는 대학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자문계약의 주체가 되고 교원은 책임자로서 실무적인 인적용역 책임만을 진다. 산학협력단이 산업자문 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이론상의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근거와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당연히 도출되는바, 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산업자문을 교원의 책임에 맡길 뿐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자문료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로 교원의 산업자문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교육 당국은 산업자문 활성화를 위해 과세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하며, 연구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

되는 연구용역과 유사하게 산업자문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산학협력 유형 중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당국은 세무 전담인력의 충원을 통해 교원의 산업자문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설문조사[8]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60%가 세무 전담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인트 벤처 창업, 기술출자,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대학 산학협력에서의 세무 이슈를 지원하자면 세무 전담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Industrial Education Enhancement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motion Act [Internet]. Ministry of Education, 2018 [cited 2018 May 29].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accessed March. 23, 2020)
- [2] S. K. Chee, "Issues of Incom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th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5, pp.219-226, May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219>
- [3] B. H. Sohn, "An Effective Promotion Plan of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s", *Ceramist*, Vol.11, No.1, pp.45-54, Feb. 2008.
- [4] D. K. Na, "Suggestions for the Non-taxation Scheme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th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594-5600, Nov.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594>
- [5] S. D. Lee, S. Y. Ko, "A Study on Tax System Related to the Industry-University-Institute", *Journal of Tax Studies*, Vol.11, No.3, pp.330-358, Dec. 2011.
- [6] K. S. Lee, "Taxation Studies of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 Focusing on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and School Based Enterprise -", *Journal of Tax Studies*, Vol.15, No.1, pp.95-111, April 2015.
- [7] J. W. Park,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axation on School Corporation,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orea, pp.102-131.
- [8] J. T. Kim, J. Y. Kim, "Th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ax Matters in Private Universities", *Journal of Tax Studies*, Vol.15, No.2, pp.189-213, Aug. 2015.
- [9] D. K. Kim, Improvement Plan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Research

Repor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pp.131-141.

- [10] B. W. Lim, The Patent Law, Ed. 14, p.1319, Hanbit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5, pp.281-306.
- [11] J. S. Chung, "A Study on Income Categorization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for Taxation on Income", *Journal of Tax Studies*, Vol.18, No.3, pp.7-52, Sep. 2018.

지 선 구(Seonkoo CHEE)

[정회원]



- 1998년 2월 : KAIST 항공우주공학
학과 (공학박사)
- 1998년 3월 ~ 2003년 6월 : (주)삼
성전자 책임연구원
- 2003년 7월 ~ 2014년 2월 : 특허
청 특허심사관(변리사)
- 2015년 2월 ~ 현재 : 국립금오공
과대학교 IT융합학과 교수

〈관심분야〉

산업재산권, 기술사업화, 산업재산 정책, 기술창업